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6
----------	-------

발의연월일 : 2026. 7. 29.

발 의 자 : 박상웅 · 조은희 · 강대식
박준태 · 이현승 · 김상훈
주진우 · 최보운 · 이종욱
김재섭 · 김미애 · 안철수
강승규 · 고동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자금지원과 연구·조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충전시설 관련 부품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도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공급·판매 및 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2조의2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관련 부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 또는 부품”을 “자동차 및 관련 부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정보
2.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 및 구매목표 제도 관련 정보
3.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이용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 ----- ----- ----- -----.
1. 환경친화적 자동차 <u>충전시설</u> <u>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u> 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1. ----- <u>충전시설</u> <u>및 관련 부품, 수소연료공급 시설 및 관련 부품</u> ----- -----
2. 환경친화적 <u>자동차</u> 또는 <u>부품</u> 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	2. ----- <u>자동차</u> <u>및 관련 부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u> ----- -----
3. (생 략) ② (생 략) <u><신 설></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2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과 환경친화적</u>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정
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시스
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정보

2.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 및 구매목표 제도 관련
정보

3.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
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 이용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보